자유경제원 e-지식 16-18

소액사건심판법의 문제점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황대성
(변호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문제점
-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황대성

변호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머리말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1,136,935건의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합의사건은 5.4%, 단독사건은 24.4%, 소액사건은 70.2%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우리가 흔히 듣는 소액재판은 소액인 민사사건을 보다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한 재판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 같은 소액사건에는 민사소송의 이상 중 적정성과 공평성보다는 신속성과 경제성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될 당시인 1973년에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 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여러 가지 특칙을 인정하였던 것인데, 그 상한액을 급격히 높여 1998년에는 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로 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큰 금액을 소액사건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당초의 법 취지인 '소액사건에 관한 민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영세 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법원의 사건처리 내지 재판운영의 능률화에 더 치중한 결과가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소액사건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 2,000만원이 결코 소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소액사건의 재판제도는 여러 절차상의 특칙으로 인해 간이, 신속하게 재판받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판결이유의 기재가 생략되어 패소 당사자가 무엇 때문에 패소했는지, 무엇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해야 할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상고이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

1) 2015년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5

이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의 관련 조항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민의 재판권 침해라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소액재판제도 일반

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과 개정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한국의 소액사건심판법은 1973.2.20. 대통령에 의해 제안되고 당일 비상국무회의[2]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바로 원안가결되고, 1973.2.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 공포되어 1973.9.1.부터 시행되었다.

제안이유는 '**민사사건 총건수의 5할 내지 6할을 점하고 있는 소송물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공정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영세 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적정성과 신속성의 양측면 중 신속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사건을 간이,경제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에 그 뜻이 있다고 보이고, 이처럼 적정성보다는 심리의 신속성에 치중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과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적정성의 희생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일정한 소액의 민사사건의 경우에 일반 국민이 손쉽게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사인간의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간이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이 위와 같다고 하여 적정성의 요청을 도외시할 수 없다.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부실한 재판을 낳을 수 있고, 이는 일반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며, 상소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실무상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위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에만 적용, ② 상고, 재항고는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③ 소는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고, ④ 당사

2) 1972.10.18.부터 1973.3.11.까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헌법개정작업을 담당하였음,

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으며,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⑥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심문하도록 하였으며, ⑦ 순회판사제도를 두어 지방법원장은 관하 판사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심판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의 제,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의 적용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2차 개정과,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3차 개정, 그리고 신속, 공정한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한 제5차 개정이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규칙이 1973.7.20. 대법원규칙 제530호로 제정되고, 1973.9.1.부터 시행된 이래 30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에서는 "법 제2조 제1항[3]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액사건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이와 같이 소액사건이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한다.

(2) 소액사건의 범위의 기준이 2,000만원으로 된 것은 1998.3.1.부터였는데, 당초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시 20만원이었던 것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따라 약 25년만에 100배로 상향된 것이다[4].

---

3)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4) **소액사건의 소송물가액 기준**은 **1973.9.1. 20만원, 1976.1.1. 30만원, 1981.2.1. 50만원, 1981.3.1. 100만원, 1983.9.1. 200만원, 1987.9.1. 500만원, 1993.10.1. 1,000만원, 1998.3.1.**

소액사건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부동산 시가가 2,000만원에 미달되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3) 그리고 다액의 채권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액을 분할하여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만약 이렇게 분할하여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5조의 2 참조).

다. 소액사건의 처리절차와 절차적 특례

(1) 소액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법제 2조 제2항).

소액사건의 처리절차는 통상의 소와 다르게 진행되는데, 원고에 의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2001.1.29. 이후부터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행권고 할 사건을 구별하여, 이행권고할 사건은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권고가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나 이의신청이 된 경우에는 통상의 소 절차로 진행되지만 통상의 소 절차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칙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소액사건의 소제기 등 처리절차를 소개하면서 해당부분에서 통상의 소와 다른 특칙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또는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3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동규칙 제2조).

(3) 소의 제기방식에 관한 특례

- 구술에 의한 소제기 허용

2,000만원으로 급격히 상향조정되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소액사건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에 의한 소제기를 허용하고 있다(법제4조 제1항). 즉,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한 후 그 제소조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법제4조 제2항, 제3항).

-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허용

소액사건의 소송에서는 제소의 절차와 심리의 개시를 간이하게 하여,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집무 시간 중에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할 수 있고(법제5조 제1항), 이 경우 바로 기일이 개시되어 당사자가 변론을 할 수 있는데, 제소의 효력은 구술로 진술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법제5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소액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구술에 의한 소제기와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원고는 직접 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근에 와서는 소액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소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고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간이하고 정형화된 간이소장양식을 비치하고 있어 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 관할법원

소액사건도 민사사건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관할법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고, 다만 특별재판적 때문에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시,군법원이 설치된 시나 군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4) 이행권고결정 제도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이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1.1.29. 신설되었는데, 변론절차 없이 원고승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에게는 더할 수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 있다. 그에 따라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법 제5조의 4 제1항, 제3항) 소액사건의 변론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제도는 피고에 대하여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법제5조의 3 제3항 단서) 피고에게 직접 송달이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게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등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법 제5조의 7 제1항).

(5) 기일지정 등의 특례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답변서의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및 변론기일의 지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제3항).

(6) 공휴일, 야간의 개정 특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법 제7조의 2). 이는 소액사건의 당사자가 일용노동자, 영세민, 직장근로자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통의 일과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공휴일에 법정을 개정토록 한 것인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7)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위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법 제8조 제2항).

(8) 심리절차 상의 특칙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제 9조 1항). 이는 민사소송법 상 구술심리주의의 예외인데, 원고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비록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서면심리만으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하겠고, 그러한 점 때문인지 이 제도 역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또 소액사건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조 제2항).

(9)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가) 직권증거조사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제 10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직권증거조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대신 법원이 석명권을 강화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서증의 인부는 처분문서나 당사자 자신 명의의 문서 등 그 인부가 소송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만 인부를 하면 될 것이다.

(나) 직권증인신문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고, 따라서 증인신문에 익숙하지 못한 당사자가 신문함을 전제로 하여 둔 규정으로, 증인신문의 실효를 거두려는 취지이다.

(다)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제 10조 제3항).

이 서면에 갈음하는 신문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법원의 소정 양식에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동법규칙 제6조). 그러나 위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서면으로서의 신문서 제출방식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 당사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실무상 잘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증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내용을 살펴보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

해야 할 것이다.

(10) 조서의 기재 생략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인낙, 포기, 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 11조 제2항).

이는 소액사건의 심리는 되도록 단기간 안에 간소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증인 등의 진술내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더라도 법관에게 이미 형성된 심증은 시간적으로 보아 별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조서작성 상의 의무를 경감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서를 생략하는 것은 소송 도중 판사가 경질되거나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 실무의 관행으로 보인다.

(11) 판결에 관한 특례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법 제11조의 2 제1항).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판결서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소액재판제도의 문제점

이상에서 소액재판절차 일반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바, 소액사건 재판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소액사건이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70%를 넘는데 비해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소액사건 법정은 거의 시장통을 방불할 정도로 항상 많은 사람들로 꽉 차있다. 그러다 보니 재판시각으로 통지받은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재판을 받게 되어 소액사건 재판의 늑장진행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1회 변론주의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소액사건의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보니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은 위 취지가 무색하게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소송절차를 잘 모르는 당사자들이 본인소송을 하는 것도 재판지연의 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은 문제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소액사건 상한액이 경제현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 재항고의 사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판결이유기재 생략으로 인한 문제점 등은 소액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강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액사건의 범위 문제

우리나라 소액사건의 소송물가액은 1973.9.1. 20만원 이하에서 1998.3.1.부터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액사건의 기준인 소송물가액은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높게 확대되어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현재 소액사건의 기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소액사건의 기준이 독일의 경우 2001년 1,200마르크(약 86만원, 2004.12. 기준)였다가 현재는 상한이 600유로(한화 약 793만원)이고,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지만 5,000달러(한화 약 600만원) 이하가 30여개 주이고 제일 높은 15,000달러(한화 약 1,800만원) 이하인 주는 3개 주에 불과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60만엔(한화 약 600만원) 이하이고, 영국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이 5,000파운드(한화 약 860만원)이고 스코틀랜드는 3,000파운드(한화 약 515만원), 북아일랜드는 2,000파운드(한화 약 343만원) 이하였으며, EU 국가의 경우 2,000유로(한화 약 265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5].

이처럼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2,000만원을 소액사건의 기준으로 한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소액사건의 상한액을 턱없이 높게 설정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서민들에게 있어서 2,000만원은 결코 소액이라 할 수 없고 전 재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의 상한을 2,000만원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소액사건의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2,000만원을 소액사건의 상한으로 한 것은 1998.3.1.이었는데, 당시 위 금액은 결코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고, 그 뒤 18년이 흘렀지만 부의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2,000만원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그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은 소액사건의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6], 또 다른 학자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7]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앞서 본 외국의

5) 뉴민주신문 인터넷 기사 "소액소송가액을 500만원 이하로..."(2011.8.29.자)와 김상영, 한국의 소액사건심판제도,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423면 이하 참조.
6) 위 뉴민주신문 인터넷 기사 참조.
7) 김도훈, 소액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2집(2008.11.), 한국외국어대학교

입법례와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여 낮출 필요도 있어 보이며, 높아도 1,000만원 정도를 넘어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좀 시간이 지난 통계이기는 하지만 2009년도에 접수된 제1심 소액사건의 소송물가액별 비교표를 보면 소가 1,000만원까지의 소액사건이 전체의 81.11%이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 중 18.62%에 그쳐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대부분이어서[8], 소액사건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소액사건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특칙이 있어 간이,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사실상 2심으로 운용되는 결과 3심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액사건의 당사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다. 즉,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당사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심판받기를 원치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싶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비록 소액이지만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간의 다툼이 심할 것이 예상되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비록 신속성은 떨어지지만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리를 받고 상고이유의 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초변론기일 전에 통상 소송절차로의 이행신청을 허용하는 등으로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실무상 변호사가 복잡한 원고 소액사건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위자료나 다른 명목으로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만들어 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청구취지 감축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역시 위와 같은 소액사건심판법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1)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통상의 소와는 달리 상고 및 재항고이유를 두 가지로 한정열거하고, 다른 사유로는 상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학연구소 335-342면.
8) 2010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515면

첫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법제3조 제1호, 하위법규의 상위법규에의 위반), 둘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법제3조 제2호, 판례위반)가 그것이다.

(2) 그런데 실제로 재판실무를 하다보면 위와 같은 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제3조 제1호와 관련하여, "위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 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대법원 2009.12.10.선고 2009다84431판결 참조),

법제3조 제2호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5.13.선고 2004다6979판결).

(3)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원일치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 간편, 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2009.2.28.자 2007헌마1433결정), 의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1992.6.26.자 90헌바25결정에서 재판관 변정수는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상고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일종의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이고, 위 법률조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 제2조 제1항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 특히 그중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 하겠다.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에 따라 결코 소액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의 사건까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위와 같이 상고이유가 제한된다면 이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한편 대법원은,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2004.8.10. 선고 2003다1878판결), 스스로 법제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고사유로 삼아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액사건 심판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좀 더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5) 이처럼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항소심은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4년도에 소액사건 중 상고심에 접수된 건은 모두 1,891건인데 그 중 파기환송된 건은 모두 22건에 불과하여 1.1% 정도에 불과하여 민사본안사건 전체 파기환송율 6.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이는 그 전에 소액사건으로서 파기환송된 통계 1%[9]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법제3조의 상고이유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에 대하여도 상고이유를 대폭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포함시켜 완화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상고이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전혀 터무

9) 1998년도 내지 2003년까지의 소액사건 상고처리 결과에 의하면 파기환송비율이 평균 1%이고, 2009년도의 소액사건 파기환송율 역시 1.09%로 대동소이하다.(이상 사법연감 1999-2004, 2010년도 참조).

니없는 법리로 당사자 일방을 패소시키거나, 엉뚱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도, 이들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 것이다. 금액이 적은 소액사건이라 하여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간이, 신속한 재판만을 추구하여 어느 쪽 당사자에게 억울한 결과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다. 1회 변론주의 원칙의 실효성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로 의제자백의 경우, 피고가 출석하였더라도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무자력 항변만 하는 경우,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 등에 국한하여 1회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되고 즉시 판결선고까지 이루어질 뿐 나머지 사건들은 대부분 1회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

소액사건은 금액이 적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송수행의 경험도 없어 소장의 실질적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청구원인 및 입증방법이 아주 불명확하여 이를 석명하거나 준비하게 하여야 할 경우는 부득이 다음 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고, 특히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의 심리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 각 나라마다 1회 변론주의 원칙을 두고 있으나, 소송물가액이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낮아 그 실효성은 오히려 크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이 많아 1회 변론주의로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14년도 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을 보면 5개월 이내에 종결된 비율이 76.3%에 이르고 있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 처리 건수도 6,096건, 2년 초과된 처리 건수도 133건에 이르고 있어[10], 사안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많이 다투는 사건은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리는 현상도 볼 수 있다.

라. 판결이유 기재 생략의 문제점

소액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990.1.13.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할 때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에 따라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판결이유 기재 생략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및 권리구제에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10) 2015년도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5

그런데 위 법 개정 이후 소액사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소액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소액사건화하여 일률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소액사건을 간편한 재판절차를 통해 이용하게 한다는 국민의 편의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보다 법원의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여 사건해결의 지연을 없앤다는 재판운영의 능률화라는 면을 보다 중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다보니 패소를 당한 당사자는 왜 패소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를 하려고 해도 패소의 이유를 알지 못해 어림짐작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금액이 적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법률적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과 그러한 점 때문에 1년 이상 진행된 소송도 많은데, 이러한 사건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항소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또 소액사건의 판결도 당연히 기판력이 있는데, 판결주문의 표시만으로는 어떤 소송물에 관한 판단인지 알기가 어렵고, 주문 외의 이유의 기재를 대조해 보지 않으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이 첨예하게 다투어졌던 사건이나 다툼의 기간이 길었던 사건, 그리고 상계항변이 제출되는 등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구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간략하게나마 판결이유를 반드시 기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부 사건들에 대하여는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부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유를 기재하기도 하나, 이는 법관마다 제각각 임의로 하다 보니 간략한 판결이유라도 기재할 필요가 꼭 있는 사건에서도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사건은 당사자를 설득하는 차원에서라도 판결이유를 꼭 기재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인 2,000만원은 일반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보아 결코 소액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소액사건심판법이 현재 한국의 민사사법 시스템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일부 당사자에게는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초와 달리 지나치게 급격히 소액사건의 상한액을 높임으로써 소액으로 볼 수 없는 사건들까지 소액사건에 포함시켜 그 당사자들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은 어떻게든 제도개선을 통해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액재판의 신속한 재판 이념 때문에 적정성의 이념이 훼손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신속한 재판보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영세채권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5분도 되지 않는 소액재판을 받기 위하여 당초 지정된 시간보다 30분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물적 시설을 늘려 소액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재판지연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일반 서민 대중들에게 2,000만원이 소액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만큼, 소액사건의 상한액을 1,000만원이나 그 이하로 낮추어야 할 것이고, 상고이유 제한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결이유 기재를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법의 개정을 통해 해소된다면 소액재판 제도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로 잘 정착되어 나갈 것이다.

소액재판도 재판이다!
-나도 당했다. 소액재판-

류여해[11)]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1. 내게 닥친 소액재판의 악몽

2014년 여름 프라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름휴가차 여행을 하고 있던 중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2000만원의 소액재판에서 내가 패소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겠다는 송달문이었다.

이 재판에 대해 나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었고 전혀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황당하게도 결과문만 통보받은 것이다. 형사법을 전공한 나도 이런 상황이 닥치자 당황스러운데 일반 국민이라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변호사 선배님께 조언을 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내가 8년동안 한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한자리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 없이 재판은 진행되어 있었고 20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건은 발단은 이렇다. 10년전, 내가 유학 갈 당시 아버지가 내게 유학비를 주셨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이라 우기는 것이다. 나에게 유학비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중요한 것은 내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니 내가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당시 내가 유학을 가면서 내 통장을 아버지가 쓰고 계셨다. 상대방은 내가 자신을 본적이 있으며 그 통장을 내가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나는 그 기간동안 독일에 있었으니 내가 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판결의 내용은 달랐다. 1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빌렸더라 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하여 딸이 갚아라”는 것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이는 부부간에 해당되는 말이란 것은 법대생이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나는 이날 이후로 소액재판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지를 깨닫게 되었다.

11)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독일 jena 대학교 형사법 박사, 법률평론가

앞서 발표문에서 다루었듯이 소액재판은 '민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영세 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다보니 엉터리 재판이 발생을 해도 결국 그 책임은 채권자라 우기는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채무자도 발생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었다.

물론 일년 간의 긴 싸움끝에 나는 결국 승소했다. 그러나 정말 그동안의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기일이 잡힐 때 마다 나는 긴장해야 했고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2. 소액재판의 많은 문제점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부실한 재판을 낳을 수 있고, 이는 일반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며, 상소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실무상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의 이 논거에 백분 동의 한다. 정확하지 않은 신속함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만들게 된다. 신속은 '정확한 신속'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대충하는 것은 신속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결국 나는 긴 싸움을 했고 이런 싸움을 겪는 것이 비단 나뿐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채권자라 우기는 사람을 구별해 낼 능력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억울한 채무자를 만들게 된다. 재판관이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만 들여다보았어도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판결을 한 판사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또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징계도 받지 않는다.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말을 하면 지나친 것일까?

소액사건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에게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재판을 하고 쉽게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분명 주소 하나쯤은 금방 찾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주불명으로 처리한 것은 정말 엉터리 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편리성은 다른 사람의 큰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3. 소액재판도 재판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정확한 잣대로 움직여야 한다. 편리성만을 찾다가는 다른 이의 자유를 한 움큼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민사소송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개인 간의 다툼이기에 쉽게 바라보고 쉽게 재판을 하게 되면 소액재판이 결국 많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좀 더 법원은 신중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소액사건에 관한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염건웅

명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인 참여

소액심판법 8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가 가능하고. 민사소송법 87조에서는 변호사이외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소가가 실제로 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겨서 얻는 이익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의제기는 구술로써 가능하지만 증거자료 준비와 변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스스로의 권리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에 법무사가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에 대한 입법례

일본	2003년 사법개혁으로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 부여
영국	정식 변호사가 아닌 FILEX에게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캐나다	비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지역적 허용
미국	California주등 8개 주에서 변호사의 법정대리권 금지, Paralegal 통해 저렴하게 소송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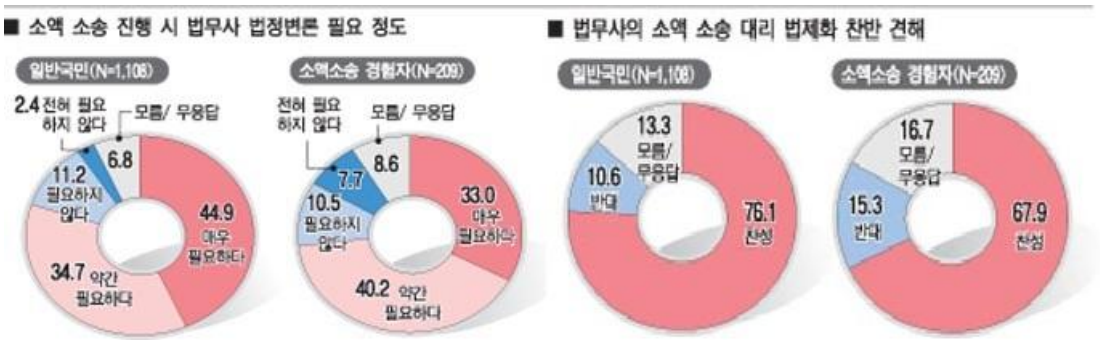

[출처. 한국갤럽.미래신문]

2.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지급명령의 개념과 화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2001년에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의 운영현황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소액사건 중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 처리기간 또한 기대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신속하게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효과는 미약해 보인다.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독촉절차상의 지급명령제도와 그 차이가 별로 없게 되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본질을 소액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여 분쟁해결의 지연을 없앤다는 능률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인데, 소액사건이라도 간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절차를 이용하게 한다는 국민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소액사건의 소제기부터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간이한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처리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정형화되고 특화된 소액사건분쟁해결에 대한 절차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한 제언

전동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1. 서

소액사건은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액사건소송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못지않게 중요한 민사소송절차의 하나로 그 자리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괴리된 사법제도를 이용자의 시점에서 재검토하면, 민사재판도 결국 사법서비스의 일환이기에 그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를 위한 절차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액사건의 범위 책정을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전적으로 대법원 규칙에 맡김으로써 소액사건의 범위가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는 재판절차가 사법서비스라는 점에 대한 인식없이 소액사건을 단지 법원이 안고 있는 엄청난 수의 사건 부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국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제도이용자가 아니라 제도운영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동안의 소액사건심판제도의 법적시스템 및 운용상에 있어 등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크게 대별하여 보면, 구술·임의출석에 의한 제소제도, 소액사건의 범위, 공휴일 및 야간법정의 개정, 조서의 기재 생략과 판결이유의 기재 생략, 법관의 직권주의적 재판운용 형태, 증거조사의 방식, 판결위주의 종국처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2. 소액심판의 남용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소액심판의 남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소액심판이 매우 간소화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증거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절차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악의의 목적으로 소액재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채권추심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채권추심업자나 사채업자들은 소액심판제도가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주에 이어서는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채권추심업자나 사채업자들의

소액심판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써, 이러한 자들의 소액심판제기는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그 소송대리 비용은 피고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규제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원고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일본[12]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고 자격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액심판제도는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일정 계층의 서민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영세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입법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같이 원고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소액집행의 특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까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특칙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나, 집행은 일반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소액임차인의 보호 이외에는 달리 소액집행의 특례 규정은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소액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은 소액채권자는 채무자의 임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평등배당주의로 인해 독점적 만족을 얻기도 어려운 집행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집행의 경제성·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법원은 예전에 금 일천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 또는 월 금 이백만 원 이하의 정기금 채권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채권액의 2분의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하여는 소액채권자를 우대하는 제도보다 소액채무자를 박대하는 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안한 민사집행법안과 민사집행법에서는 제외되었다.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제도를 개선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감치를 인정하였으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종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제도적 보완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최적의 집행이라는 이념이 충분히 관철되어 있지 않고,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집행의 실효성 강화·확보 및 채무자의 보호대책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12) 일본의 경우, 같은 사람에 의한 반복적인 소액소송 제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인인 경우 연 10회로 제한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68조 제1항 단서 및 민사소송규칙 제223조).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장래의 바람직한 강제집행제도를 실험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액집행에 대하여는 간이하고 저렴·신속하면서도 소액채무자를 배려하는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진정한 의미의 소액(일천만 원 이하)사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이임신청을 해온 견우, 수소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본 후 채무자의 채무이행 지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업자 등에게 남용될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액채권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연간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을 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절차선택권의 보장

현재 소액사건의 당사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즉 당사자가 소액사건일지라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법적 정의에의 접근 기회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앞으로 당사자에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고 상고이유를 제한 받을 것인지, 혹은 비록 신속성은 떨어지더라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충실한 심리를 받고 상고이유의 제한 등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절차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일본의 경우 피고가 통상 재판절차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의 특칙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함[13]).

5. 결

소액사건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일반소송절차와는 달리 쉽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도가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법제도의 발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의 입장에서, 많은 민사본안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건은 비록 소액일지라도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소송이므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14]

13) 일본 민사소송법 제373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이용자의 시점에서 사법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하여 소액사건소송절차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새롭게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액사건만이 소액사건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액심판의 남용을 막을 간접적 규제 및 소액집행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액사건소송절차 내에 최소한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에게 통상소송절차에로의 이행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이용자를 위한 사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사사건의 비약적인 증가에 비하여 사법부의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질적·양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15] 사법부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법관의 증원이라는 점 또한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4) 이덕훈, "소액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면.
15) 임성근, "소액사건현황", 「소액사건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결과보고서」(중), 법원행정처, 2001. 7. 13면.

소액사건심판법 토론
- 민사소송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1. 들어가며

문제제기 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은 ① 역시 소액사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과 ② 판결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③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있다는 것일 것이다. 본토론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위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생각과 아울러 우리 민사소송체계의 문제점을 던져보고자 한다.

2. 소액사건 심판법의 문제점

가. 2,000만 원은 변호사에겐 소액이지만, 의뢰인에겐 소액이 아니다.

소가가 2,000만 원 이하 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하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만 법조인들인 미국과 달리 유사법조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변호사들이 사실상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건만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영업적 측면에서 정식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건이 아닌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선임료를 높게 부를 수도 없고[1] 의뢰인 측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변호사대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왜 2,000만 원이냐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선의로 해석하자면 어차피 변호사 대리가 안 되는 사건이기에 서민에 대해 법원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뢰인에 있어서 2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변론의 여러 가지 간이화 특칙은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나. 이유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상 상소권 박탈이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현행 3심이란 심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결과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일 것이다.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사건의 난이도는 액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를 할 경우에 판결의 이유 적시는 패소당사자에게 마지막

1)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에게 사건이 쉽다는 것도 아니어서 사건에 대한 집중도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다를 바 없다.

으로 부여한 반증의 기회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론주의[2]와 처분권주의[3] 원칙상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소송 진행능력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4] 판결이유를 써주는 것은 당사자에게 마지막 기회부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도 만일 판결에 이유가 설시되지 않는다면 애를 먹을 것이 분명한데, 일반인들의 경우는 더욱 심할 것이다.

다.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제한을 합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기본권침해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제102조에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와 유기적으로 연결해본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권리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3. 소액사건 심판법은 민사소송 및 배상체계 문제의 축소판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소액사건을 다루는 판사는 한 달에 많게는 몇 천 건을 다루고 있다. 더군다나 소액사건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지도 않고 있다. 과연 재판이 제대로 될 것인가? 대법원에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도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40,000건 이상의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 이것도 과연 재판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질문을 던져본다. 1억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약속대로 갚았을 경우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통해 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판을 걸었을 때 결국 받아내는 액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재판을 통해 버려지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해보면 재판은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다.

문제는 지금의 민사소송 사법체계와 법률문화가 대단히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판까지 오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이행이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개념이 없어지고, 결국 법원으로 오는 사건이 폭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판사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흐름이 그 재판 중에 정지된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거래비용에 있어서 법적대비에 관한 비용은 일절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주의.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職權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3)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란 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의미한다.
4) 특히 변호사대리 사건이 아닌 본인소송의 경우엔 자명하다.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 체결시 변호사의 자문 한 번만 받으면 문제의 90%가 예방될 수 있음에도 그걸 미쳐 하지 않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을 왔다갔다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는다. 그렇게 이겨놓고도 손에 쥐는 돈은 결국 얼마 안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뤄진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하루아침에 선진국으로 갈 수는 없다. 제도가 의식을 고양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지금의 민사소송체계, 특히 손해배상 액수에 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재판이란 그 본질이 조정이 아니다. 일도양단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고, 그냥 약속이행을 하면 될 것을 재판까지 끌고 와서 다투는 자에겐 그에 따른 징벌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폭주하는 사건을 줄이고 사회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일 뿐 아니라, 사고가 터지면 법원이라는 국가권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자유주의 원리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